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게임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10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게임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 (안 제30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12. 27.

다. 회 부 일: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1. 게임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 (안 제30조)

가. 개정안 요지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본문).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안 제30조제1항 단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작업자 등의 폐업 미신고시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게임제작업자 등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0조 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u>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게임제작·배급·제공업의 허가·등록·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허가·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폐업신고 기한 7일과 관련하여, 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 준수의 어려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옴.¹⁾
-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전 등과 관계되지 않은 사업의 폐업신고 등은 그 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추세라는

1)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10.10.)」에서 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 연장을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음.

점,²⁾ 게임제작·배급·제공업의 폐업은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폐업신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

○ 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조·변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행정청의 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법적 효력을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 영업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불법행위 근절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단순히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여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2) 영화업,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2.28.)됨에 따라 7일에서 30일로 연장됨.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입법례는 [참고 1] 자료 참조

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
함께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제
도를 악용하여 불법행위 적발 이후 처분을 피하고자 처분 진
행 중 폐업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다른 분야에서
도 [참고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하여 행정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 제한 입법례가 다수임을 고
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게임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업신고 제한이 필요하
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입법례³⁾를 참고하여 문구
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허가·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등록·신고사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는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3) 수정의견 - “다만, 제35조, 제36조, 제38조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행정제재처분 관련 폐업신고 제한 유사입법례는 [참고2] 자료 참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해 옴.

다만, 국세청은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조제1항 규정4)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과세정보의 제공요구가 있을 경우 국세공무원이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효율적

-
-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달성의 위해서는 개정안 문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u>1개월 이내</u>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u>3개월 이상</u>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2

행정제재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 제한 유사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u>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u>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u>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u>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u>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u>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u>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u>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⑬ 교습자는 <u>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u>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u>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u>